직업(직무)변경시 정산금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체결)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 사유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납입 하여야 할 금액(이하「추징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하는 경우
- ②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에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분할납부금액에 이 특별약관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이하「최종분할납부금액」이라 합니다.)을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금액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효력)

- ① 계약자가 제1회 최종분할납부금액을 납입한 경우, 추징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과 동일한 계약변경 효력을 가집니다.
- ② 제1항의 계약변경 효력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액 일시납입시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분할납부시의 해지환급금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시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또는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분할납부금액의 납입 완료 이전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최종분할납부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에서 잔여 최종분할납부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잔여 분할납부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직전 분할납부금액 납입해당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